

보도일시	<b>배포 즉시</b>		
배포일시	2019. 8. 14.(수)	대변인실	044-203-6581
담당과	평생학습정책과	담당과장	정윤경(044-203-6345)
		담당자	사무관 이운식(044-203-6380)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학교교과교습 학원의 강사 자격기준 완화를 위한  
학원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중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 언론사명 / 보도일시 : 한국일보(송옥진 기자) / '19. 8. 14.(수)

□ 제목 : 대학 1학년도 학원강사 추진.... “사교육 시장 확대 우려”

###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 학교교과교습 학원의 강사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학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지난 7.26.부터 9.4.까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중입니다.

< 학교교과교습 학원의 강사 자격기준(별표 3) 신규 대비표 >

(현 행) “2.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개정안) “3.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학생으로 재적 중이거나, 재적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제3호를 별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 추진

○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현행법령상 학교교과교습 학원의 강사 자격을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써 대학에서 2학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강사로서의 자격을 얻는

반면, 전문대학생은 졸업자만이 강사자격이 주어지는 차별적 요소가 있어 이러한 **규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 그러나, 「학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후 일부단체에서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면 **사교육시장 확대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일부 시·도교육청은 학원 교습의 질 저하를 우려하며 **양질의 교습을 보장하는 학습권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한 시·도교육청, 교육단체,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학원법 시행령」 개정을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이운식 사무관(☎ 044-203-638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3]

학원강사의 자격기준(학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구 분	자 격 기 준
학교교과 교습학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li> <li>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li> <li>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li> <li>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li> <li>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li> <li>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li> <li>8.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li> <li>9.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li> </ol>